

2024. 5. 8.(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세 무 과 장	송영민	02-2133-3380
소득소비세팀장	이수연	02-2133-3400
관련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https://etax.seoul.go.kr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8매

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어디든 방문 가능
- 전자 방문·우편 신고 후 31일까지 계좌·신용카드로 납부...100만원 초과시 분할 가능
-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 납부기한 9월 2일까지 연장... 대상자에 자동안내문 발송

-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하라고 밝혔다.
-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 전자신고 시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

○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

○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 모두채움신고서는 과세기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모두 채워 주고 그 내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확인·수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안내문임.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위택스는 110번, 이택스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또한, 서울시는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월)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금)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아울러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자치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위치

연번	자치구	자치구 신고창구 주소	구청 내 위치
1	종로구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종로구청 2층
2	중구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2층 세무2과
3	용산구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용산구청 1층 공용회의실
4	성동구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2층 세무민원실
5	광진구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2층 세무종합민원실
6	동대문구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2층 세무종합민원실
7	종량구	종량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종량구청 1층 세무민원실
8	성북구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3층 성북배움터
9	강북구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강북구청 별관 3층 회의실
10	도봉구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지하 1층 일자리센터
11	노원구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별관 지하1층
12	은평구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5층 은평홀
13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본관 2층
14	마포구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11층 회의실
15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105(신정동)	양천구청 지하1층 회의실2
16	강서구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지하1층 소회의실
17	구로구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본관 2층 다목적실
18	금천구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금천구청 12층 세미나실
19	영등포구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지하1층 소회의실
20	동작구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지하 소회의실1
21	관악구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관악구청 본관 2층
22	서초구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본관 7층 지방소득세과
23	강남구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지하종합상황실
24	송파구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송파구청 6층 체육관
25	강동구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2층 지방소득세과



행정안전부 국세청 각 지자체 로고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국세청 홍보대사
홍지희 감사관

신고기간 2024. 5. 1.(수) ~ 5. 31.(금)

납부기한 2024. 5. 31.(금)까지

신고방법

전자신고

PC 홈택스 신고 ▶ 워택스 연계신고
모바일 손택스 신고 ▶ 워택스 연계신고

방문신고

대상자 모두채움 대상자(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장소 □□ 시·군·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00시·군·구청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000-0000-0000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대상자

□ 2024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수출기업인·산불 피해 납세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4. 9. 2.	2024. 9. 2.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세부내용	제외대상
수출 기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소규모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로 2023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